

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73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2. 3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2. 3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12. 11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장사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동 조례를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납골당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장사등에관한법령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안을 정비(안 제1조)
- 납골당사용료징수기준(안 제10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“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”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명이 “장사등에관한법률”로 개정되고, 상위법의 내용이 일부 바뀌므로 하여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납골당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데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- 다만, 납골당사용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관외 유연고 유골 사용료와 관외 무연고 유골 사용료를 50%나 단번에 대폭으로 인상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안 제10조제1항 중 유연고 및 무연고 관외 사용료를 50% 대폭 인상한 근거는
- 답 : 우리 군민의 사용자를 보호하고 도내 여타 시군보다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균형에 맞도록 조정한 것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